

☎ 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팀원 서형석(6535)/ E-mail: kma_shs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2-13990 호
시행일자 2023. 2. 14.
수 신 수신처 참조
참 조
제 목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(BCP) 지침 적용 안내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4082(2023.2.14.)

3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(BCP) 지침 적용과 관련하여 **최근 일 확진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확진시 격리기간 단축 등이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**할 우려가 있어 관련하여 주의를 당부해온바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지침과 QnA를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않도록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- 2/14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 14,371명으로 BCP 지침에 따른 격리기간 단축 적용 불가
- (단계)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고려, 단계를 구분하여 대응

주요지표	1단계(대비)	2단계(대응)	3단계(위기)
일일 확진자수	3만명 이상~5만명 미만	5만명 이상~10만명 미만	10만명 이상

- * 확진자 日 3만명 이상 발생 시, 단기간 내에 확진자 급증 가능, 의료기관 자체 BCP 시행 점검·준비

- 확진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

중증도	1단계(대비)	2단계(대응)	3단계(위기)
무증상 또는 경증	7일 격리 후 근무 가능	5일 격리 후 근무 가능	3일 격리 후 근무 가능 (무증상자,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)
중증	최대 20일 격리		

- * 위 일일확진자수 별 단계와 대응하여 격리기간 적용가능(격리기간 기준 추가 단축 불가)

<참고>

□ 격리기간 단축 등 BCP 지침 적용은 의료기관 자체 BCP 계획 수립 후 적용 가능함.
(사전에 BCP 수립, 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대상자 선정, 전자문서 결재 및 보관 후 시행)
※ 시행시 보건소 통보 불필요

□ 격리기간 단축 적용이 가능한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

- ① 3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
- ② 2차 접종 후 14일 ~ 90일 이내인 자
- ③ 2차 접종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

- ※ 붙임 : 1.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.
2.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(BCP) 지침 제3판. 1부.
3.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A.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